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6. 9.(금)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3년 5월 31일
- 회부일자: 2023년 6월 1일

3. 제안 이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 조항 추가(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근거 조항 변경(안 제2조제1항)
-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위원회 명칭 변경 반영(안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및 구체화(안 제4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상위법령에 근거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6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근거 조항 마련(안 제10조)
- 교육공무원 조례 적용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1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등 종전의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

5.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 급변하는 정치·경제 상황 및 사회구조 속에 교육행정도 법과 제도의 통제를 받는 정책만으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신속한 공공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추세¹⁾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 조례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던 조문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1) 행안부, 적극행정 활성화·조직문화 혁신 추진...지자체 혁신책임관 회의 개최 (2022.5.11., 연합뉴스 보도)

근거하여 추진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제1항에 담아, 조례의 근거 조항을 변경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명시된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제도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도록 직책으로 명시¹⁾하였음. 또한, 위촉직 위원의 위촉방법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는 법령 조항과 중복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이 입법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예산과장, 노사정책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 안 제8조(비밀준수 의무) 및 제9조(수당 등)는 신설 조항으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비밀준수 의무 및 위원 수당, 여비지급 근거를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표창 등)를 신설해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 포상¹⁾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적극행정 문화 조성 활성화를 통한 충청북도 교육행정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의 신설을 통해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본 조례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이외에도 개정 조례안에서 현행 조례에서 담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²⁾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1) 충청교육청,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2022.12.29., 내외뉴스통신 보도)

: 충청도교육청은 29일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총 6명을 선발하고 시상했다. 이들은 ▲포상 휴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근무성적 가점 등 인사상 특전과 함께 장려50만 원, 우수 70만 원, 최우수 100만 원의 포상금도 받는다.

이번 선발은 각급 기관·학교에서 제출한 사례 중심으로 ▲국민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 ▲발표완성도 등 5개 항목을 심사해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일 최종 결정했다.

2)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해 상위법 규정과 조례와의 체계성에 부합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의 적극행정 장려 조항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적극행정 관련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 개정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조례의 조문별 검토에서도 전체적으로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 측면에서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 입법절차를 준수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하는 경우